

## 일본 전기공사업의 업무적정화에 관한 법률

’97. 7. 30 입법예고된 우리나라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전력기술인들이 일본의 전기공사업법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전기공사업의 업무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부분 발췌하여 지난 5월호에 이어 소개합니다.

&lt;출판과&gt;

전기공사업의 업무적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의 업무적정화에 관한 법률
<p>개정 1978년 4월 24일 법률 제27호 개정 1987년 9월 1일 법률 제84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총 칙</b></p> <p><b>제1조(목적)</b> 이 법률은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등록등 및 그 업무의 규제를 함으로써 그 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고 따라서 일반용 전기공작물 및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보안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① 이 법률에서 「전기공사」란 전기공사업법(1960년 법률 제139호) 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전기공사를 말한다. 다만,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의 판매에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② 이 법률에서 「전기공사업」이란 전기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등록전기공사업자」란 다음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등록을 받은 자를 「통지 전기공사업자」란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한 자를 「전기공사업자」란 등록 전기공사업자 및 통지 전기공사업자를 말한다.      ④ 이 법률에서 「제1종 전기공사사」란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제1종 전기공사사를</p>	<p>「제2종 전기공사사」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제2종 전기공사를 말한다.</p> <p>⑤ 이 법률에서 「일반용 전기공작물」이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일반용 전기공작물을 「자가용 전기공작물」이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장 등 록 등</b></p> <p><b>제3조(등록)</b> ①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제17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항에서도 같다)는 풀 이상의 시·도 구역내에 영업소(전기공사의 작업관리를 하지 않는 영업소를 제외한다. 이와 같다)를 설치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하나의 시·도 구역내에만 영업소를 설치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p> <p>② 등록 전기공사업자의 등록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p> <p>③ 전항의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 등록을 받아야 한다.</p> <p>④ 갱신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2항의 유효</p>

전기공사업의 업무적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의 업무적정화에 관한 법률
<p>기간의 만료일까지 그 신청에 대한 등록 또는 등록의 거부 처분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종전 등록은 동항의 유효기간의 만료후에도 그 처분이 될 때까지의 기간은 계속 그의 효력을 갖는다.</p> <p>⑤ 전항의 경우 캠신 등록이 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가산하도록 한다.</p> <p><b>제6조(등록의 거부)</b> ①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일때 또는 등록 신청서 혹은 그의 첨부서류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 기재가 있고 혹은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을 때에는 그의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법률 전기공사업자법 제3조제1항, 제2항 혹은 제3항 또는 전기용품취체법(1961년 법률 제234호)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그의 집행이 끝나고 또는 집행을 받을 것이 없어진 날부터 2년간 경과하지 아니한 자</li> <li>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그의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li> <li>등록 전기공사업자로서 법인인 자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의 처분에 있던 날 전 30일 이내에 그의 등록 전기공사업자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처분이 있던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li> <li>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받고 그의 정지기간중에 전기공사업을 폐지한 자로서 그의 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li> <li>법인으로서 그의 임원중에 전4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li> <li>생략</li> <li>생략</li> </ol> <p><b>제8조(등록 행정청의 변경인 경우에 있어서의 경과조치 등)</b> ① 통상산업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등록 전기공사업자가 그의 등록을 받은 후 하나의 시·도 구역내에 영업소가 있게 되어 계속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그날부터 30일간은 당해 등록은 계속 그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p>	<p>그자가 그 기간내에 제3조제1항의 시·도지사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하여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는 기간에도 같이한다.</p> <p>② 생략</p> <p>③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은 등록 전기공사업자는 그 등록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계속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등록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의하여 다음의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계속 전기공사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종전에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돌 이상의 시·도의 구역내에 영업소가 있게 되었을 때</li> <li>해당 시·도의 구역내에서 영업소를 폐지하여 다른 하나의 시·도 구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게 되었을 때</li> </ol> <p><b>제9조(승계)</b> ① 등록 전기공사업자가 당해 등록에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고 또는 등록 전기공사업자에 대하여 상속 혹은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자 또는 상속인(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할 상속인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자) 혹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혹은 합병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은 그 등록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전부를 양수받은 자 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전원의 동의로 사업을 승계하여야 할 상속인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자) 혹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혹은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의 승계에 관계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 혹은 제3항의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자신이 동조 제1항 혹은 제3항의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그의 승계시에 동조 제1항의 통상산업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상산업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등록 전기공사</li> </ol>

전기공사업의 업무적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의 업무적정화에 관한 법률
업자가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은 등록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때 2.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은 등록 전기공사업자가 통상산업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등록 전기공사업자의 지위 또는 다른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은 등록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때 3. 등록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동시에 통상산업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등록 전기공사업자의 지위 및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은 등록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때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은 둘 이상의 등록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때(그의 등록을 한 시·도지사가 등록할 때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통상산업부령의 정하는 것에 따른 승계일(상속인 경우에는 그 상속의 개시가 있었던 것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뜻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전기공사업자 등록부의 등본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등록말소인 경우에 전기공사의 조치)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전기공사업자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 전기공사업자였던 자 또는 그의 일반승계인은 등록말소전에 체결된 첨부계약에 관계되는 전기공사를 인계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등록 전기공사업자였던 자 또는 그의 일반승계인은 등록말소후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당해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전기공사의 시공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를 인계하여 시공하는 자는 당해 전기공사를 완성하는 목적 범위내에서는 계속 등록 전기공사업자로 본다. ④ 전기공사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그의 전기공사의 첨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변경 계출) ① 등록 전기공사업자는 제4조 제1항 각호에 게재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그의 등록한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등록증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등록 전기공사업자는 동항의 규정에 따른 계출에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출에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따라 계출하였을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의 2(자가용 전기공사만에 관계되는 전기공사업의 개시의 통지 등) ①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관계되는 전기공사(이하 「자가용 전기공사」라 한다)만에 관계되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10일 이전까지 둘 이상의 시·도의 구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하나의 시·도 구역내에만 영업소를 설치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③, ④ 생략
제11조(폐지 계출) 등록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그의 등록한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업 무
제15조(등록증의 반납) 등록 전기공사업자는 그의 등록이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의 등록을 한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주임 전기공사사의 설치) ① 등록 전기공사업자는 그의 일반용 전기공작물에 관계되는 전기공사(이하 「일반용 전기공사」라 한다)의 업무를 시행하는 영업소(이하 이조에서 「특정 영업소」라 한다)마다에 당해 업무에 관계되는 일반용 전기공사의 작업을 관리시키기 위해서 제1종 전기공사사 또는 전기공사사법에 따른 제2종 전기공사사
제16조(등록 전기공사업자 등록부의 등본 교부 등) 누구나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그의 등록을 한 등록 전기공사업자에 관한	

전기공사업의 업무적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의 업무적정화에 관한 법률
<p>면장의 교부를 받은 후 전기공사에 관하여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제2종 전기공사사로서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자를 주임 전기공사사로서 두어야 한다.</p> <p>② 전항의 규정은 등록 전기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의 임원중 어느 임원)가 제1종 전기공사사 또는 전기공사사법에 따른 제2종 전기공사사의 면장의 교부를 받은 후 전기공사에 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제2종 전기공사사일 때에는 그 자가 자주적으로 그의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 영업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등록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게재하는 장소에서 당해 특정 영업소마다 당해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임 전기공사사의 선임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임 전기공사사가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 까지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li> <li>주임 전기공사사가 결여되었을 때(전항의 특정 영업소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이 적용하게 이르렀을 경우를 포함)</li> <li>영업소가 특정 영업소가 되었을 때</li> <li>새로이 특정 영업소를 설치하였을 때</li> </ol> <p>제20조(주임 전기공사사의 직무 등) ① 주임 전기공사는 일반용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용 전기공사의 작업관리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일반용 전기공사의 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주임 전기공사사가 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시행하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p> <p>제21조(전기공사사가 아닌 자를 전기공사의 작업에 종사시키는 것의 금지) ① 전기공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종 전기공사사가 아닌 자를 자가용 전기공사[특수 전기공사(전기공사사법 제3조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 전기공사를 말한다. 제3항에 대하여도 같다)를 제외한다]의 작업(동조제1항의 통상산업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다)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p> <p>② 등록 전기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종 전기공사사 또는 제2종 전기공사사가 아닌 자를 일반용 전기공사의 작업(전기공사사법 제3조제2항</p>	<p>의 통상산업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다)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p> <p>③ 전기공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특수 전기공사 자격자(전기공사사법 제3조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 전기공사 자격자를 말한다)가 아닌 자를 당해 특수 전기공사의 작업(동항의 통상산업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다)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p> <p>④ 전기공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 전기공사 종사자(전기공사사법 제3조제4항에 규정하는 인정 전기공사 종사자를 말한다)를 간이 전기공사(동항에 규정하는 간이 전기공사를 말한다)의 작업에 종사시킬 수 있다.</p> <p>제22조(전기공사를 청부시키는 것의 제한) 전기공사업자는 그 청부한 전기공사를 해당 전기공사에 관계되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청부시켜서는 아니된다.</p> <p>제23조(전기용품의 사용제한) ① 전기공사업자는 전기용품취체법 제25조제1항,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6조의6제1항의 표시가 붙어 있는 전기용품이 아니면 이것을 전기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전기용품취체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24조(기구 비치) 전기공사업자는 그 영업소마다 절연저항계 기타 통상산업부령에서 정하는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p>
	제 4 장 감 독
	<p>제27조(위험 등 방지명령) ①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의 등록을 받은 등록 전기공사업자 또는 이에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한 통지 전기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등록 전기공사업자 또는 통지 전기공사업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 발생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기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써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발생할 우려가 클 때</li> <li>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li> <li>②. ③ 생략</li> </ol>

전기공사업의 업무적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의 업무적정화에 관한 법률
<b>제28조(등록 취소 등)</b> ①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의 등록을 받은 등록 전기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또는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li> <li>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출을 하지 않고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li> <li>3.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항 혹은 제3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li> <li>4.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li> <li>5. 부정한 수단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등록을 받았을 때</li> </ol> ②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에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한 통지 전기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li> <li>2. 제1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또는 허위로 통지하였을 때</li> <li>3. 제21조제1항 혹은 제3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li> <li>4.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li> </ol> <b>제29조(보고 및 검사)</b> ①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구역내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통상산업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자 및 통상산업부장관에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고 또는 그 직원에 영업소, 전기공사의 시공장소 기타 업무에 관계있는 장소에 입회,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시키고 혹은 관계자에 질문시킬 수 있다. 다만, 개인의 거주용	에 해당하는 장소는 관계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가 아니면 입회시켜서는 아니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③ 생략</li> </ol> <b>제30조(청문)</b> ①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에 관계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예고한 다음 공개적으로 청문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전항의 예고에는 기일, 장소 및 사안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li> <li>③ 청문시에는 당해 처분에 관계되는 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사안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기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li> </ol> <b>제31조(불복신청의 수속에서 청문)</b>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또는 결정(각하의 재결 또는 결정을 제외한다)은 전조의 보기에 따라 공개적으로 청문한 후에 하여야 한다.
<b>제5장 잡 칙</b>	
<b>제33조(민원처리)</b>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의 등록을 받은 등록 전기공사업자 또는 이에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한 통지 전기공사업자와 발주자간의 전기공사에 관하여 생긴 민원처리의 일선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b>제34조(건설업자에 관한 특례)</b> ① 제2장 및 제28조중 등록취소에 관계되는 부분의 규정은 건설법(1949년 법률 제100호)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건설업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전항에 규정하는 자로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다음항에 규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전항에 게재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제3조제1항의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은 등록 전기공사업자로 보고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li> <li>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자로서 자가용 전기공사만에 관계되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에 게재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한 통지 전기공사업자로 보고 이 법률을 적용한다.</li> </ol>

전기공사업의 업무적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의 업무적정화에 관한 법률
<p>④ 제1항에 규정하는 자는 전기공사업을 개시하였을 때(다음 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취지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그 계출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전기공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도 같다.</p> <p>⑤ 제1항에 규정하는 자는 자가용 전기공사업에 관계되는 전기공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취지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전기공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도 같다.</p> <p>⑥ 등록 전기공사업자가 건설업법 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건설업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 자에 관계되는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은 그의 효력을 상실한다.</p>	<p>1.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임 전기공사업의 선임을 하지 아니한 자</p> <p>2.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에 규정하는 기구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p> <p>제4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0조제1항 또는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출을 하지 않고 또는 허위 계출한 자</li> <li>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제28조제4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고 또는 허위로 통지한 자</li> <li>제17조의2제1항, 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하지 아니하고 또는 허위로 통지한 자</li> <li>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고 또는 허위로 보고한 자</li> <li>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하고 또는 동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고 혹은 허위로 답변한 자</li> </ol>
<p>제36조(별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는 이것을 병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등록을 받지 않고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li> <li>부정한 수단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등록을 받은 자</li> <li>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li> </ol>	<p>제41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에서 전조까지의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p>
<p>제3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3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는 이것을 병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 전기공사의 작업 또는 일반용 전기공사의 작업에 종사시킨 자</li> <li>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첨부시킨 자</li> </ol>	<p>제4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엔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8조제2항 혹은 제3항, 제9조제3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계출을 하지 아니하고 또는 허위 계출한 자</li> <li>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li> <li>제17조의2제2항 혹은 제3항 또는 동조 제4항에 서 준용하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또는 허위로 통지한 자</li> <li>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식을 게재하지 아니한 자</li> <li>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기재하고 또는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li> </ol>
<p>제38조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용품을 사용한 자는 1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